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금지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7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 의견	2
1.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연령제한 금지	2
2.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발견된 질환의 치료비 등 지원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8%로 전체 평균치인

5.8%에 비하여 높으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은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에서 제한고 있는 만큼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Ⅲ.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연령제한 금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검진을 설계하고 연령 제한을 두지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전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u><신설></u>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¹⁾에서는 농약·분진 등 특정 유해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구분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목적	여성농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여성어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대상자	<u>51~70세* 여성농업인</u> (2026년부터 80세까지로 확대예정)	<u>51세 이상 여성어업인</u>
검진 주기	2년	2년
검진 항목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폐활량, 농약중독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2025.
2.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5.1.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2026년 80세로 확대 예정)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더욱이, 현행법 제11조의3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성권은 출산·양육과 연관된 권리²⁾로서 50세 미만의 가임기³⁾ 여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5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어 법률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시하고, 연령 특성 등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령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연령 제한을 금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연령을 제한하는 조문은 없으나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가 등이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권에 대한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연령 제한없이 모든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총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⁴⁾

2) 현행법 제11조는 모성권 보장을 위하여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권은 출산·양육에 관련한 권리로 볼 수 있음.

3) 통계청은 가임기 여성을 15~49세로 설정하고 있음.

4) 여성농어업인은 116만 3천명의 규모이나, 추가대상인 50세 미만 여성어업인은 7천여명('23년 기준)으로

[전 연령 대상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 추계]

연령	여성농업인 수	연간검진 대상인원*	검진비**	검진 관리비***	합계
51~80세	887천명	222천명	239억원	28억원	267억원
50세 이하, 80세 이상	276천명	69천명	75억원	8억원	83억원
전체 여성농업인	1,163천명	290천명	314억원	36억원	350억원

*연간검진 대상인원: 여성농업인수× $\frac{1}{2}$ (격년주기)×검진율 50% 적용

**검진비: 검진인원의 90%× 22만원×50%(국비)+검진인원 10%×18만원(골밀도검사 제외)×50%(국비)

***검진관리비 : '26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인원 증가 비율에 따라 산정

※자료: 농식품부 제출자료(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수 기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검진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방식 및 효과를 연구·분석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단계임.

이를 감안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검진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효과적인 재정지출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정책 확대 시기 및 수단에 대한 추가 논의가 가능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51~80세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며, 추후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원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규모 차이가 크므로, 본 보고서는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재정을 추산하였음.

2.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으로 발견된 질환의 치료비 등 지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u>비용의</u>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④ ----- ----- <u>제1항 및 제2항에</u> ----- ----- <u>비용과 건강검</u> <u>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u> <u>및 치료비용의</u> ----- -----.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u> -----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⁵⁾은 농어업 안전보험 가입자인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농어업작업에 관련한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질병 등에 대한 치료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⁶⁾

이에 현재 정부는 2026년 기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연간 97,300원~182,700원)의 50%(영세농업인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100%⁷⁾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농업인안전보험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가입대상	만 15~87세 농업인, 농업근로자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가입기간	1년
가입형태	임의가입
운영기관	NH농협생명
보험료	97,300원~182,700원 / 연간
정부 지원을	보험료의 50%(일반농), 70%(영세농) (자부담 30~50% 수준이나, 지자체·농협 추가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7) 전남도,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100% 지원(전라남도청 보도자료(2025.3.))

다만,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제도”로 이원적으로 운영된다면,

유사 목적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행정 및 국가재정의 효율성이 저하 및 각 제도의 지원대상 및 자부담액⁸⁾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⁹⁾ 내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에 따른 치료비까지 지원할 경우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성격이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되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¹⁰⁾는 국가로 하여금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근거한 별도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8) 농어업인안전보험료는 연간 97,300원~182,700원(2026년, 일반형, 산재형 기준)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자부담률은 보험료의 30~50% 미만임(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¹⁾

문 의 처
02)6788-5417

1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고

농업인안전보험 개요

□ 사업목적 : 농작업으로 인하여 경영주(가족 포함) 및 피고용주에게 발생하는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 보상으로 생활안정 도모

□ 예산현황 : ('22) 577억원 → ('23) 621 → ('24) 626 → ('25) 628 → ('26) 591

□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 국고지원(영세농업인* 70%)

* 영세농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피보험자/사업시행기관 : 농업인·농업근로자 / NH농협생명

□ 보험료 : (일반1형) 97,300 (일반2형) 142,600원, (일반3형) 109,300원, (일반4형) 182,700원 등

* 유형별 가입비중('25) : (일반1) 61.1%, (일반2) 10.9%, (일반3) 1.0%, (일반4) 24.6% 등

□ 가입자 : ('21) 900천명 → ('22) 912 → ('23) 953 → ('24) 992 → ('25) 1,019

□ 보험금지급: ('21) 53,006명/803억원 → ('22) 52,639/799 → ('23) 58,052/920
→ ('24) 49,728/1,079 → ('25) 52,661/1,189

*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21) 85.3% → ('22) 83.6 → ('23) 91.1 → ('24) 106.0 → ('25) 116.3

□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비교('26)

구 분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의무가입) 법인 및 상시 5인 이상의 농업 사업장 * (임의가입)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농업 사업장, 농업인	만 15 ~ 87세 농업인, 농업근로자
가입기간	사업 시작일 ~ 사업 폐업 또는 끝난 날	1년
가입형태	의무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NH농협생명
보험료	670,956원/ 연간	97,300원~182,700원 / 연간
정부 지원율	사용자 100% 부담	보험료의 50%(일반농), 70%(영세농) (자부담 30~50% 수준이나 지자체농협 추가지원)

2026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급부명	일반형				휴일보장형	농작업근로자	
	1형	2형	3형	4형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족급여금	6,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억 2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	1.2억원
장례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고도장해급여금 (장해율 80% 이상)	5,000만원	9,000만원	7,500만원	1억 2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1.2억원
재해장해급여금 (장해율 3%~80% 미만)	5,000만원 × 장해율	9,000만원 × 장해율	-	1억 2000만원 × 장해율	5,000만원 × 장해율	1,000만원 × 장해율	1.2억원 × 장해율
상해·질병치료 급여금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실제비용 (최대 5천만원)
휴업(입원)급여금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	1일당 2만원 (최대 120일)	1일당 6만원 (최대 120일)
간병급여금 (재해장해, 질병장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재활고도장해급여금 (장해율 80% 이상)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3,000만원
재활재해장해급여금 (장해율 3%~80% 미만)	500만원 × 장해율	500만원 × 장해율	-	3,000만원 × 장해율	500만원 × 장해율	500만원 × 장해율	3,000만원 × 장해율
특정질병수술 급여금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1회당 30만원
보험료	97,300원	142,600원	109,300원	182,700원	14,700원	3,000원 ~30,300원	88,800원 ~177,500원